

(붙임 2)

## 한국은행 인천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4. 3. 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인천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대출실행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기타 인천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30%)
3.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기타 규정 준수 여부(2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2024.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뿌리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부분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024년 4월 30일 이전에 취급되어 2024년 6월 30일 현재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sup>1)2)</sup>**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1	창업기업	일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 영위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A2	벤처기업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A3	혁신기업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INNO-BIZ기업 및 MAIN-BIZ기업 -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참여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A4	녹색기업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A6	추천기업 <sup>3)</sup>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업(인증서 발급 5년 이내)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지원대상 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 1-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벤처·혁신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별표 1-1>에 해당하는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A9	전입기업	일반	타 지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천시 또는 김포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 영위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A10	수출관련기업	일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또는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농업·임업·어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 ~ 0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재해자금 등 필요기업 <sup>4)</sup>	일반	계절적 자금수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원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sup>4)</sup>	일반	다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조선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2) 해운업(501~502) 3) 도소매업(45~47) 4) 운수업(49, 51~52) 5) 음식·숙박업(55~56) 6) 여행업(752) 7) 여가업(90~91)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3) 추천금액과 대출 실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출된 증빙으로 금리를 감면받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원함  
4) 본부장은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미래 성장 유망 산업	바이오 산업	화장품 제조업	2042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의약품 제조업	21210, 21220, 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11, 70112, 70113, 70119, 70130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관광 산업	「관광진흥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단, 관광유희 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	
물류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50111, 50121 제외)	
	항공운송업	51(51100 제외)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취급업	529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항공	항공산업 글로벌 인증(AS9100, NASCAP)을 받은 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로봇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제조업내 5대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2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 (2592, 2593, 2594, 2599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6299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291(2919 제외)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2925, 2929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04 제외)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2)</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도소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등록된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도박, 성인용품 등 불건전,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